판례로 본 건설분쟁

자료제공 『알기쉬운건설분쟁사례해설집』 건설경제신문사刊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가부

쟁점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가압류되었더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가능성]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무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도급인)는 채무자(수급인)에게 가압류된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가압류는 고려에 넣지 않고 실체적인 판단을 통하여 원고(수급인)의 청구권이 이유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도급인)에게 무조건적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의 추심에 대하여 가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수급인으로서는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행청구의 소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판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다59033 판결)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자료제공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임의 철거에 대한 대처

Q 정화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정화조를 납품 설치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청회사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A 정화조의 소유권이 원청회사에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미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공사의 완료 여부(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통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음), 정화조 설치공사를 한 회사에서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인부나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현장에 직원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큼), 계약서 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다른 공사의 지연으로 본 공사의 약정기간이 초과한 경우

Q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공정이 40% 정도에 머문 상태에서 다른 공사(건축)의 진척이 늦어져 이미 약정된 공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될 경우 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공사의 지연이 심각하여 당초 약정된 공사기간보다 상당한 정도의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상대방이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우선권과 범위

Q 임금채권의 우선권에 대한 범위와 근거는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정산 방법

Q 하도급업자가 중도에 공사를 중단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전체 공사 중 기 시공 부분의 기성율에 공사 하도급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하도급업체에서는 부실설계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향후 추가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워크아웃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우 계약해지 하려면?

Q 원도급자인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사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A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A 하도급계약서에 A가 대금지급보증을 안한 경우는 계약해제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종전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가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할 당시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밖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서에 금융기관의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음이 금융기관의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거나, 어음할인이 되었으나 A사가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설비의 자금으로 이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